

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839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1일  
보건복지위원회

**1. 심사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2년 6월 21일 상정·의결)

**2. 제안설명(복지건강실장 김경호)**

가. 제안이유

-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는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 계교육,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동지원 등 노인인력개발, 일자리지 원, 취업알선을 위해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 할 일자리전담기관으로써,
- 법인·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을 민간위탁 추진코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2. 9 ~ 2015. 9)
- 위탁업무
  -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  -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
  -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교육, 사회공헌형 일자리, 재취업 교육훈련, 취업알선, 사후관리 등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

## 3. 검토보고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### □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

#### 가.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개요

- 본 동의안은, 상기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해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는 베이비 부머세대 은퇴 등 급증하는 신노년층 등장에 대비하여 사회공헌·창업·재취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060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설립 예정(2012. 9월 준공

예정)인 일자리전담기관으로,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의 규정에 근거해 설치·운영 됨.

- 시장이 상기 (가칭)시립 어르신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  -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
  -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교육, 사회공헌형 일자리, 재취업 교육훈련, 취업알선, 사후관리 등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

#### 나.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.
- 그런데, 상기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주로 동 센터의 운영·관리 및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, 각종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,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

- 민간위탁의 타당성 내지 적합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에 많은 논쟁이 있었음.
  - 민간위탁 찬성론자들은 민간위탁이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가져오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, 반대론자들은 그러한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함.
  - 반대론자들은 민간위탁은 부패와 부정의 소지를 증대시키고 정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보며, 설사 정부의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이는 비용이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전가된 것으로 사회적 총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.
-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의 사무는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교육, 사회공헌, 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.
- 이런점에서 사회공헌, 재능기부 등 신노년층의 은퇴 설계 교육 및 일자리 사업에 있어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, 민간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,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 위탁 대상 사무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- 따라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의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(가칭)서울특별시어르신활동지원센터는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교육,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동지원 등 노인인력개발, 일자리지원, 취업알선을 위해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할 일자리전담기관으로써
- 나. 법인·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코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(가칭) 서울특별시 어르신 활동지원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외 2필지  
(구)국립보건원 8동 1층 일부, 2층 전체
- 시설규모 : 연면적 3,956.43m<sup>2</sup>, 건물 1층 274.94m<sup>2</sup> 2층 837.96m<sup>2</sup>
- 준공일자 : 2012. 9월
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50세이상 어르신



위 치 도



(가칭) 어르신활동지원센터 8동 전경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2. 9 ~ 2015. 9)
- 위탁업무
  - (가칭)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  -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
  -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교육, 사회공헌형 일자리, 재취업 교육훈련, 취업알선, 사후관리 등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
- 소요예산 : 227,000천원 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)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
-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
-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2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(가칭) 서울특별시 어르신 활동지원센터는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교육,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동지원 등 노인인력개발, 재취업 교육훈련, 사후관리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·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.
- 특히, 사회공헌·재능기부 등 신노년층의 은퇴설계 교육에 있어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효과 제고 측면에서 능력있는 법인·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
 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
    2.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
    3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
    4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
   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
-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2조  
시장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·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,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제3호
  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  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기타사항 : 해당없음